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666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농업법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오○○
피 고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변 론 중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17,006,850원, 지방교육세 965,790원, 농어촌특별세 965,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2. 농·축산·임업 경영 및 산림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구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3. 20. B으로부터 ○○시 C 전 3,365㎡ 및 D 전 4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다. 피고는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2022. 2. 4.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17,006,850원, 지방교육세 965,790원, 농어촌특별세 965,7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위 토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해 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전단 및 제2호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1 내지 14, 17,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인 2019. 3. 20.로부터 1



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2019. 3. 20.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원고는 사업다각화 및 대량화를 통해 농업법인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를 위해 2019. 4. ~ 5.경부터 위 토지에 주 재배종목으로 감자, 고구마 등을 식재하고, 유휴 토지가 발생한 부분에는 각종 농산물 등을 재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21. 8. 30.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출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는 호박이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이 2019. 3. 20.부터 1년간 위 사업계획서에 따라 직접 영농을 하였다면 그 기간 수확물의 출하내역이나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 세무신고 등 내역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인 2019. 3. 20.부터 1년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직접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가) 2020년 항공사진(갑 제12호증의1)을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밭이랑이 만들어



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 는 한다. 그러나 위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위 토지에서 영농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유기질비료 신청내역(갑 제17호증)은 이 사건 토지와 관계없는 ○○○시 관할의 토지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비료를 이 사건 토지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다) 모종 등 구입내역(갑 제18호증)은 이 사건 토지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구입한 모종의 양도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해 적다.

라) 영농사진(갑 제19 내지 22호증)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그 촬영된 시점도 이 사건 기간 이후이다.

마)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2021. 6.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농막(컨테이너)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및 ○○○○○○○○관리원장이 2021. 9. 14. 원고에게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호박을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이 사건 기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위 토지에서 직접 영농을 하였으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수확물의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적어 농산물 시장에 납품하지 못하고 주변에 나누어 준 관계로 출하자료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799㎡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나 원고 법인의 설립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기간 직접 영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내역이나 세무신고 등의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04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김○○

판사 박○○



별지1

목 록

1. 취득세: 아래 각 금액의 합계 17,006,850원
 - 1) 본세 12,600,000원¹⁾
 - 2) 무신고 가산세 2,520,000원
 - 3) 납부불성실 가산세 1,886,850원
2. 지방교육세: 아래 각 금액의 합계 965,790원
 - 1) 본세 840,000원
 - 2) 납부불성실 가산세 125,790원
3. 농어촌특별세: 아래 각 금액의 합계 965,790원
 - 1) 본세 840,000원
 - 2) 납부불성실 가산세 125,790원. 끝.

1) 소장 별지 기재 '12,000,000원'은 '12,600,000원'의 오타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별지2

관련 법령

■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끝.